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방향

소방방재청 재해경감팀 정길호 연구관

1. 머리말

세계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필리핀판과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유라시아판의 경계에 위치한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영국 등을 포함하는 유라시아판의 동쪽 가장자리 내륙에 속하고 있어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 등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도 지진발생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사례를 접할 수 있고, 더욱이 1978년부터 2005년까지 연 평균 24회 정도 발생하였으나, 최근 5년간은 연 평균 42회 정도 지진이 발생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외국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규모 지진과 지진해일들은 우리의 지진방재체제를 되짚어보게 되었다.

2005년 3월 20일에는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 해역에서 규모 7.0의 지진으로 동·남해안에 지진해일 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다행히 지진해일은 발생되지 않았고, 부산, 울산 등 우리나라 전역에서 진도 III~V의 지진이 감지되는 등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다. 지진이 발생한 후쿠오카 지역은 우리나라와 같은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하여 판 경계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 수백년간 중소규모의 지진만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진발생 경향을 보이던 곳이었는데, 급변에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지진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예시한 지진이라는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동남쪽 인근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동해안 및 남해안도 지진해일피해 위험지역이 될 수 있어 내륙지역뿐만 아니라 해안지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우리나라 지진방재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작년 10. 8. 파키스탄 북동부 캐쉬미르(Kashmir) 지역에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으로 인해 8만여명의 사망자와 수만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진방재에 대한 대책마련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었다

따라서, 2005. 5. 30일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을 발족하여 7개월간 우리나라 지진방재대책에 대한 개선대책과 종합적인 로드맵 작성 등 범정부차원의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하였다.

II. 그간의 추진경위

1. 지진방재종합개선 과제 선정

가. 국무총리 지시 : 2005. 3. 22(화)

후쿠오카 근해 지진발생이후 범정부차원의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토록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다.

나.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 마련 국무회의 보고 : 2005. 4. 12(화)

2005년 4월 12일 국무회의 보고된 지진대책에는 지진관측시스템, 예·경보시스템, 내진설계 설정 및 운영,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 지진방재 교육·훈련 및 홍보 기타 제도정비 등으로 18개 중장기 개선과제로 구성되어 있었고, 개선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 작성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였다.

2.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 운영 : 2005. 5. 30~12.31(7개월)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에는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삼성방재연구소, 민간전문가 등 11명이 상근자로 참여하였고, 건설교통부 등 10개부처 담당자와 관계전문가 34명이 비상근으로 참여하였으며, 자문위원회에는 3개 분과를 두고 24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하였다.

8개분야 25개 개선과제를 선정, 업무와 제도를 개선하는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진재해경감대책법(안) 작성하였다.

3.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 운영 성과

가. 정책 개발

1) 지진방재종합대책 마련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 발족 당시 20개 개선과제에서 4개 과제를 2개 과제로 통합하고, 7개 과제를 신규 발굴하여 총 25개의 개선과제를 선정, 업무와 제도를 개선하고,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였다.

2) 지진 및 지진해일 상황관리매뉴얼 작성

지진이 발생되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된 경우 재난종합상황실에서의 구체적인 실행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상황관리 매뉴얼로 풍수해와는 달리 예측이 불가능하여 사전 대비를 못하는 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진 및 지진해일 상황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2006년부터 지진 및 지진해일 훈련시 본 매뉴얼의 적용성 및 숙달도를 점검하고 있다.

3)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

국내에서 경험하지 못한 강진과 지진해일 내습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범정부적인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전 설정된 매뉴얼의 필요에 따라 NSC 위기관리센터 및 정부 각 부처와

사전 협의 하에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였다.

본 매뉴얼은 대도시의 강진발생과 해안지역의 지진해일 내습 상황을 구체적으로 가정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들의 구체적인 임무 및 역할을 상호 연계·작성되어 유사시 매뉴얼에 의해 자동적으로 재난대응 절차를 수행한다.

4) 지진재해대책법 초안 작성

풍수해 위주의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진과 지진해일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인 제도의 정립을 위해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의 지진방재 개선대책 사항 중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한 사안을 담은 지진재해대책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우리나라의 지진방재대책의 근간을 위한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을 추진중이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나. 집행 활동

1) 국가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구축 계획 작성

미국의 HAZUS와 일본의 DIS 개념을 응용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지진재해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진발생시 한정된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전국단위의 진도분포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강진 발생시 건축물과 인명의 피해 규모를 예측하여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중앙 및 지방 재난관리부서에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코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1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06년도 하반기에 본 시스템 개발로 지진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었다.

2) 2005년도 지진·지진해일 도상훈련 실시

기존의 상황전파 위주의 도상훈련에서 탈피하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이에 따른 수습과정을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지진 및 지진해일 도상훈련을 2005년 11월 24일(지진 : 경기도 광주시, 지진해일 : 경북 울진군)에 기상청과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지진 및 지진해일 도상훈련을 통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체적인 역할이 담긴 매뉴얼의 작성은 절실히 필요했던 사항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매뉴얼 작성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매뉴얼의 숙지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3) 시설물 내진실태 조사 수행

국내의 내진대책으로 1960년 원자로 및 발전소 건설부터 1988년 건축물의 내진설계 개념 적용으로 본격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나, 내진설계 적용 이전 기존 시설물의 내진실태를 파악한 실적이 없으므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을 통하여 국내 시설물의 내진실태를 조사하였다.

소관 시설물의 자료를 정리하여야 할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진설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존 시설물 현황 파악에 대한 자료도 미흡한 상황에서 정확한 내진실태 조사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건축물의 경우 전국 건축물 대장자료(670만건)를 활용하여 내진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4)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지진관련 연구 실태 조사

자연재해의 총괄관리 및 조정기능을 소방방재청에서 수행하면서 지진에 대하여는 재난관리 차원의 기능을 수행하여 지진관련 연구개발 및 활용에 대한 정리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을 계기로 정부 각 부처에서 실행하고 있는 R&D 실태를 조사하였다.

지진에 대비한 충분한 연구개발이 부족한 국내 실정에 비추어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의 R&D 실태조사와 지진방재종합대책 보고서가 안전한 국가건설을 위한 지진재난 대비 R&D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파키스탄 지진피해현장 조사

작년 10월 8일 파키스탄 대지진 발생에 따라 지진재난 관리 실태 및 지진피해 양상 등을 조사하여 국내의 지진방재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7명)을 10. 18 ~ 24 기간 동안 파키스탄 무자파라바드시 등의 지진피해 현장과 파키스탄 정부 재난종합 상황 실태를 조사하였다.

- 조사기간 : 2005. 10. 18 ~ 10. 24 (7일간)

- 조사지역 : 파키스탄 무자파라바드, 발라코트, 이슬라마바드 지역 등

- 합동조사단 :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 삼성방재연구소,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서울대 지진공학연구센터 지원) 등의 6개 기관 7명으로 구성

파키스탄 정부 수립이후 지진에 대비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에서 이번과 같은 강진 발생은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손실과 국가 경제의 퇴보를 가져왔다.

파키스탄의 사례 조사를 기회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재난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강진 발생에 대비한 지진방재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6) 외국 지진관련 자료 번역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지진방재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한정된 연구 실적과 재난관리 제도의 보완을 위하여 미국(지진재해경감프로그램법 외 5건)과 일본(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의 11건)의 선진 지진방재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지진관련 자료를 번역하여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III. 지진방재종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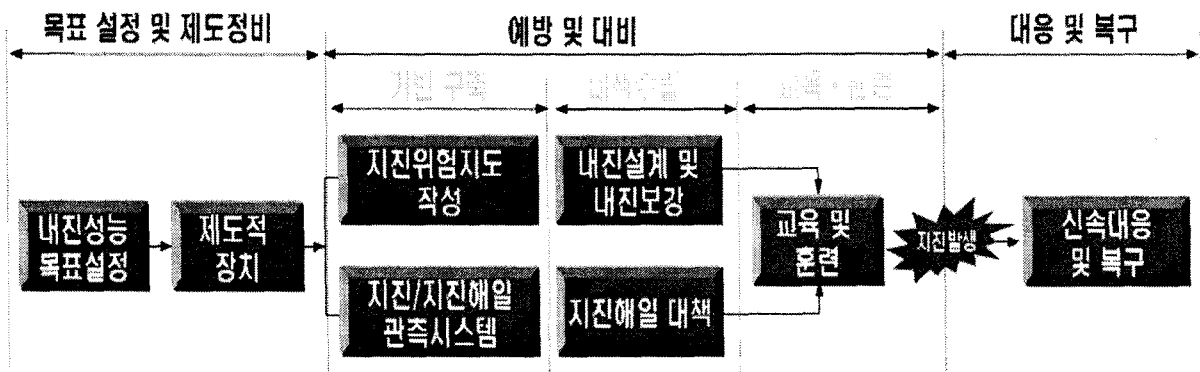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강진 지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물질·인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거 역사기록과 최근의 지진발생현황 및 지진학적 연구를 통해서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시스템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면 국가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에서 마련한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소관부처 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체계

그림 1과 같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8개 분야로 구분하고 세부계획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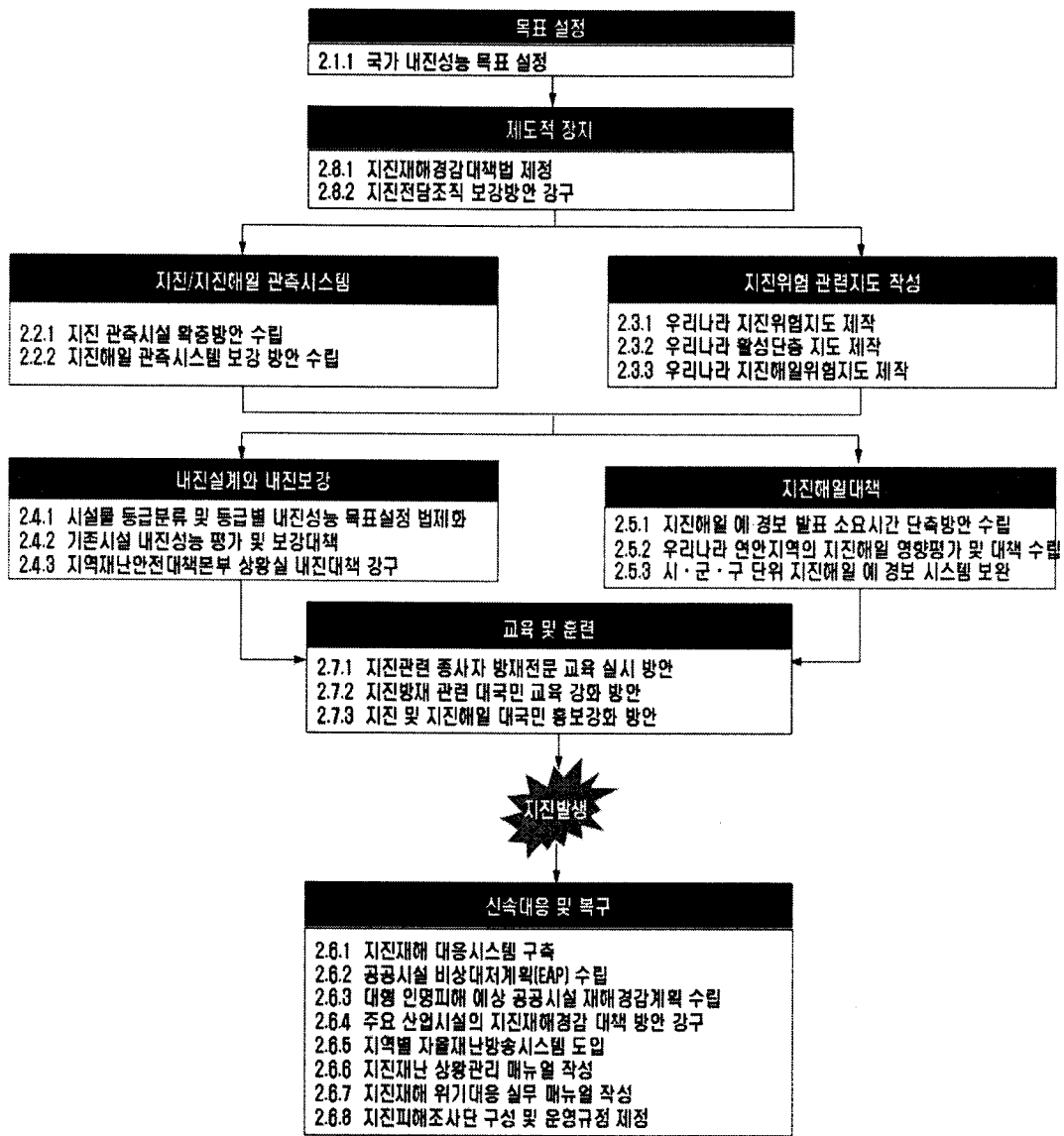
< 그림 1. 지진방재종합대책 체계 >

지진방재대책은 과학기술 및 산업과 국가경제가 발달하고 국민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 이에 비례하여 수준이 높아지고 발전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 내진성능목표는 국가 경제발전과 연계하여 재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지진위험지도는 관측 데이터와 해당 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 주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의 성능목표와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전체적인 국가 산업경제활동과 삶의 수준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대응 및 복구시스템 최근에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IT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가 사회-경제시스템이 최단기간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련 R&D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뒷받침해야 하고,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진방재대책과 기술도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고 있고 첨단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제적 수준과 표준에 적합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림 2에 지진방재종합대책 세부과제를 나타내었다.



< 그림 2. 과제 분류 체계 >

2. 지진방재종합대책

가. 국가 내진성능 목표 설정

국가적 차원에서 내진성능목표가 설정되면 정부의 임무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진방재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국가 내진성능 목표는 우선 국가적인 관점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내진안전성의 수준으로 인명피해, 재산피해, 국가기능손상 등의 관점에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의 각 구성 요소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지진피해의 상한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과거에는 개별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내진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진방재대책의 근간이었으나,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 지진피해를 경험한 후에는 도시나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내진성능 목표는 수립되어야 하고, 이는 국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일시에 달성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지진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와 마비된 사회기능의 조속 회복을 위해 분야별 R&D를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 내진성능목표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지진/지진해일 관측시스템

지진관측은 단기적으로는 지진발생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게 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진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우리나라 지진위험의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인 내진대책수립이 가능하게 된다.

최적의 내륙 지진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지진관측시설을 확충하고, 지진관측기관간 통합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관측환경 개선과 관측소 위치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해안 지진해일 조기정보를 위해 해저지진계 및 해일 파고계 증설 등 지진해일 관측시설 확충하고, 동해 해저단층대와 지진활동자료 D/B 구축하며, 동해안 주요지점에 대한 지진해일 전파특성, 도달시간, 해일높이 등의 D/B화를 추진하고 있다.

초고층 건물 등 주요시설물에 가속도계 등을 설치하여 지진거동 특성을 계측할 계획이다.

다. 지진위험지도 제작·활용

지진이 발생하면 물리적, 비물리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지반진동의 세기와 분포, 지진해일의 높이와 공간적 분포, 지표단층파열의 정도와 공간적 분포가 정량적으로 규명되고, 지도화(지진위험지도, 지진해일위험지도, 활성단층지도 등)될 필요가 있다.

지진위험지도는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피해추정을 위한 기본 자료인 동시에 내진설계와 지진대응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지진위험지도와 지진구역을 재평가하여 갱신을 추진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와 자료를 D/B화하고, 활성단층지도 작성을 추진하고, 활성단층지역에 대한 개발과 주요시설물 설치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 피해경감을 위해 지진해일위험지도 제작을 추진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각종 조사·연구 및 사업시행을 위해 조사한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라. 내진설계와 내진보강

지진위험도 정보가 체계화되면 이에 근거하여 피해규모와 범위를 국가 내진성능목표에서 설정한 한계이하로 한정하기 위한 내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내진대책은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구조적인 대책의 대표적인 것은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외국에서는 사회전체적인 기능 유지라는 측면에서 개념과 성능목표를 통일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설물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각 등급별로 성능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부처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시설부터 내진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과 정부보조나 지원을 받아 신축하는 저층건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종합상황실은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이 완료된 건물에 설치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마. 지진해일대책

지진이 발생하면 지상의 구조물과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해상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인명손실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야기되므로, 지진해일대책은 지반진동에 의한 피해 대책과는 별도로 수립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경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진자료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및 지진해일 특보기준 정량화, 통보수단 다양화, 전용통보시스템 구축 등 지진해일 분석 및 통보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시·군·구단위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보완 및 30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여 활용 중이며, 민방위경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추진중이고, 유관기관전용 핫라인 및 재난방송요청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CBS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을 전국에 확대하였다.

또한 연안지역 지진해일 위험평가 및 대책수립을 위해 지진해일 침수위험 분석 및 평가, 정량적인 기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바. 신속대응 및 복구

최근의 지진대책은 물리적 피해를 방지하는 전통적 방법을 탈피하여 국가의 전체적인 기능 유지와 신속하게 회복하는 개념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이는 지진 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경우에 가능하게 되고 최근 세계 각국의 지진피해사례에서 명백해지고 있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최단 시간 내에 피해의 규모와 범위 및 분포를 파악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지진발생시 지역별 진도를 자동 계산하여 중앙 및 지역재난종합상황실에 자동 표출하고, 지역별 인명피해를 예측하는 지진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7년도에는 이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진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지진발생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조치할 상황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중이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지진재난 발생시 중앙행정기관과 산하단체 등이 조치할 위기대응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 대비하고 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등을 위해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단위 자율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재난방송 전용통신과 전산망 구축하였다.

댐, 가스, 전기, 송유관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위험이 높은 공공시설에 대해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진재해원인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해 전문가들로 중앙 및 지역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하여 대비하고, 지진피해 발생시 건축물과 교량, 라이프라인 등의 안전성과 사용여부를 신속히 판정하기 위한 평가단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 교육 및 훈련

지진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 자연현상으로 일반 국민 뿐 아니라 담당 실무자들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완벽한 대책과 계획도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평소에 실제와 다른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지진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진방재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과 홍보대상에 맞게 특성화하여 대국민 행동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학생과 군인 등에 대한 지진방재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 제도적 장치

각종 지진재해 방지대책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예산 및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지진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제정 등 제도화이다.

따라서 지진재해관련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진방재대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올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기상청 등에 지진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IV. 맺음말

지진재해는 태풍, 호우 등 풍수해와는 달리 사전예측이 불가능하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나, 지진관측 및 통보, 시설물 내진대책, 지진재해대비 및 대응, 지진관련 연구 등 지진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기능별로 분산되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이 미흡하였다.

작년 3월 20일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동·남해안 지역이 지진해일피해 위험지역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내륙지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학계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지진재해의 예방 및 대비 실태를 재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를 경감과 확산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지진관련 사항이 내진설계기준 설정 등 3개 조항에 불과하여 지진재해에 대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대책 수립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각 부처 등 관련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예방, 지진관측·통보, 신속대응, 긴급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법제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경감시키는 등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현행 업무 수행체계 및 개선과제와 방향이 제시되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지속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나라의 지진방재대책 수준이 한 단계 높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